

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

세탁 용역업체 입찰유의서 및 선정제안서

(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공고 제2019 - 06호)

입찰유의서

1. **입찰명** :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세탁 용역업체 사업자 선정
(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공고 제2019 - 06호)

2. 입찰시 유의사항

가. 본회 소정의 입찰서 양식에 기재사항을 정자로 명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
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(VAT)를 포함한 총액을 한글로 기재하고 한글과
아라비아 숫자가 다른 경우에는 한글로 된 금액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나. 인감날인이 없는 입찰서는 무효이며 입찰서는 지정된 시간까지 투찰하여야
한다.

다. 낙찰자 선정은 연수원이 제시한 항목들에 대해 총액을 최저가로 제출한 업체로
선정하며, 항목은 총 8개이며 다음과 같다.

※ 항목 : 이불피, 베개피, 침대패드, 연수복(조끼), 솜이불(겨울), 이불(여름), 안대(교육용),
침대커버(외국인용)

3. 입찰 참가자격

가. 서울, 경기지역에 소재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

나.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세탁업 신고를 필하고 의료기관 세탁물을 취급하지
않는 업체

다. 숙박교육이 종료된 후 즉시 세탁물 교체작업이 가능한 업체

라. 최근 2년 이상 해당분야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

마. 기타 상기 용역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업체

바. 현장설명회 참석 및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업체

사.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인 입찰 참가 가능

4. 입찰서 제출

가. 입찰참가자는 입찰서(붙임 양식 참조)가 담긴 봉투를 밀봉 후 밀봉한 곳에
인감을 찍어 준비한 후 입찰 당일 본원에 제출함

나.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 및 밀봉한 곳에 사용되는 인감은 입찰참가 신청서
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함.

5. 입찰무효 및 해약조건

가.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한 입찰

나.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

다. 허위 및 부정한 증빙서류 제시·담합·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낙찰 받은 경우

마. 기타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의무 불이행이 있거나 원활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원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.

6. 기타 유의사항

- 가. 낙찰 후 당 연수원 사정으로 세탁 품목은 낙찰업체와 합의 하에 일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음
- 나. 낙찰업체는 세탁물 수거 및 세탁 후 되끼우기, 이불교체를 해야 함
- 다. 낙찰자는 낙찰 후 본원이 지정하는 날까지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을 하며, 세탁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함.
- 라.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공고문 및 제안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은 본원에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.
- 마. 본 공고 및 입찰유의서, 제안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7. 계약체결 후 해지사항

- 가. 세탁물의 세탁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3회이상 수정 지시를 받은 경우
- 나. 용역업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로 인해 교육에 손해를 입혔을 때
- 다. 세탁물 납품의 지체 및 세탁물의 분실, 훼손 등으로 인해 3회 이상 교육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
- 라. 기타 연수원이 계약을 해지할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

8. 검수 및 비용지급

- 가. 생활상담실의 담당직원은 납품한 세탁물을 검수
- 나. 용역업체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경우 경과일수 1일에 대하여 0.25%를 지체 상금으로 세탁비용에서 공제
- 다. 세탁비용은 매월 초 낙찰업체의 청구에 의한 지급

9. 계약관련 업무 및 세탁관련 담당자

- 가. 계약관련 업무담당자 : 연수지원부 김나린(Tel : 031)780-7832, Fax : 031)780-7839)
 - 나. 세탁관련 담당자 : 국내연수부 이기윤(Tel : 031)780-7827, Fax : 031)780-7829)
- ※ 질의사항은 문서 또는 팩스로 제출하며 전화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.

세탁 용역업체 선정 제안서

1. 용역 주요내용

- 용역계약 대상품목 : 8종
 - 이불피, 베게피, 침대패드, 침대커버, 연수복(조끼), 솜이불(겨울), 홑이불(여름), 안대
- 계약기간 : 2019. 8. 14 ~ 2020. 8. 13(1년)
- 연간 합숙교육인원 : 30,300명 정도(예상)
 - 정규교육 : 11,500명 정도, 위탁교육 : 800명 정도, 산업교육 : 18,000명 정도
- 세탁물 용역업체 업무 주요 요약
 - 세탁물 세탁(8종)
 - 세탁후 침구류 커버 썩우기(이불, 베게 등) 및 침대패드 깔기
 - 각각의 침대, 3단 매트에 침구류 비치
 - 외국인 숙소 침대커버, 방수패드 썩우기 실시
 - 계절별 이불 교체
 - 세탁 전·후 생활관내 사물함 및 화장대 오물수거, 정리정돈
 - 침대밑 실내화 정리정돈 및 바닥청소

2. 용역 세부내용

가. 기본사항

1) 연수원생활관 개요 : 붙임자료 참조

2) 세탁물 용역 세부내역(청소요령)

가) 교육생 입교 전, 수료 후 상시(일일) 청소

- 세탁물수거 및 교체 : 근면관, 자조관, 협동관, 자립관, 사택관, 숙직실, 직원숙소 등 교육생 및 기타 사용흔적이 있는 생활관의 침구류 일체(시트, 이불피, 베게피)를 수거한 후 세탁이 완료된 침구류로 교체한다.
- 생활관내 사물함 및 화장대의 오물수거 및 정리정돈
- 침대밑의 실내화 정리정돈 및 바닥청소
- 교체 후 사용자(교육생)가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리정돈 하여야 하며 침대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.

나) 세탁물 반출

- 생활상담실 직원의 전화 또는 구두로 작업사항을 받는 즉시 수량,

- 납기일 등을 확인한 후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세탁물 반출
- 세탁물은 생활관에 있는 생활관 각층에 있는 세탁물 수거장소에서 수거하여 반출
- 세탁물 수거 및 납품횟수 : 주 1~3회(숙박교육에 의해 변경가능)

다) 세탁물 세탁

- 세탁물은 100% 수돗물 세탁을 기본으로 함
- 예비세탁, 본세탁, 행굼 등 전세탁 공정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합성세제와 표백형광 처리제를 완전히 제거하고 마지막 행굼시 정전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세제를 사용
- 당원에서 발주하는 세탁물과 병원세탁물 등 세균감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과는 같은 공장에서 세탁할 수 없으며 계약 후 위와 같은 사실이 발견 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

라) 세탁물의 납품

- 침구류는 세탁물 용역계약서에 의거 세탁후 수량을 확인하여 납기일 및 납기시간에 맞추어 납품하고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짐
- 담당직원이 납품된 세탁물을 확인한 결과 세탁에 이상이 있어 재세탁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재세탁에 따른 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
- 세탁물은 수량을 확인하여 담당직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침구류의 수거 및 세탁 후 되끼우기, 이불교체 등을 하며 남는 물건은 지정한 장소에 정리정돈
- 반출시 온전한 세탁물이 분실,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용역업체는 분실, 훼손물과 동일한 수준의 재질 및 수량으로 대체 공급하거나 동일 수준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변상
- 연수복 등 : 세탁물 용역계약서에 의거 세탁 후 치수별로 구분하여 약속된 수량대로 묶어 지정된 장소에 납품한다.

마) 바닥부분(생활관내 침실바닥 등)

- 실내 및 기타 바닥부분은 먼지를 제거하고 기름걸레로 닦음
- 실내화 정리정돈 및 침대구석진 곳을 중점으로 청결 유지 관리

바) 사물함 : 사물함내 오물수거 및 물걸레청소, 옷걸이 유지보수(사물함당 2개)

사) 화장대 : 화장대 물걸레청소, 헤어드라이기 정리정돈, 머리빗통 청결유지

3) 청소도구(재료)

- 세탁물교체 및 생활관 청소에 필요한 청소도구 중 개인장비(앞치마, 장갑 등)는 용역업체 부담으로 하며 공용장비(기름걸레, 마포, 빗자루 등) 및 연수용품(옷걸이, 빗 등)은 연수원 부담으로 한다.

나. 청소시간

- 청소원의 작업개시 시간은 교육생 수료일 수료시간으로 하며 당일 청소를 원칙으로 하되 연이어 교육생이 생활관을 사용할 경우 입소 두시간전에 작업을 완료한다.
- 단,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을 시 청소용역 근무시간을 변경(연장) 가능

다. 근무준수사항

- 1) 청소원에 대한 신원, 품위, 건강관리, 안전, 근무 중 사고 등에 대한 책임과 모든 법률상(민·형사)의 문제 전반에 대하여 용역업체가 책임진다.
- 2) 본 원내에서 보고, 듣고, 취득한 모든 사항은 절대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 불순물이나 수상한 점 등은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하며, 기밀이 누설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법률상의 책임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을 용역업체가 진다.
- 3) 청소원은 신원조사 결과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.
- 4) 용역업체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교육을 종업원에게 실시하여야 하고 위험성이 있는 작업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5) 배치된 청소원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빈번한 근태불량, 근무지 이탈, 근무태만, 업무지시 불이행, 직장비방, 비위사실의 발견, 보안상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청소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 될 시 용역업체에 교체 요구 할 수 있으며, 용역업체는 사규에 따라 재교육 훈련 및 감독조치 또는 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.

- 붙임 : 1. 생활관 호실별 사용 인원 현황 1부.
2. 입찰 관련 양식 각 1부.

